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수탁제 하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금전을 차주에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여 차주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처분토록 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6호)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호, 제28호 신설)
-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0,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mailto: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